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추가 등〉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74호)

〈전략기술 유출·침해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58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추가 등	4
2. 전략기술 유출·침해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	11
※ 참고자료: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도	17

I . 제 안 경 위

【의안번호 제2205474호】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2.
3. 회 부 일 : 2024. 11. 13.

【의안번호 제2205558호】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5474호】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 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의안번호 제2205558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5조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추가 등 (김종민의원안 제16조)

김종민의원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전략산업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고,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제3항에서 제2호(“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를 삭제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만 남도록 규정¹⁾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 행	김종민의원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	① ----- ----- ----- ----- ----- ----- ----. ----- ----- ----- -----

1) 제1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1호(수도권 외의 지역)만 남게 되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제2호의 내용을 본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현행	김종민의원안
쳐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전략산업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 <u><삭제></u> <u><삭제></u> ④ (현행과 같음)

현행 법 제16조는 특화단지 지정의 대상과 절차 및 우선 고려 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호2)에서 규정한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3)으로

- 2)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제3항에서는 이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과 2)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전략산업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전략산업 지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는 한편, 우선 고려 대상 지역에서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제16조제3항제1호)을 삭제⁵⁾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남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5
5) 제1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2호만 남게 되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제2호의 내용을 본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이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특화단지 지정 결과 투자액 다수가 기존에 전략산업이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2024년 말 현재까지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12개 단지, 면적 229km², 투자계획액 합계 717조원으로, 그 중 수도권에 위치한 특화단지 갯수는 17%(2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21%(48km²), 투자액 기준으로는 90%(648조원)에 해당함.

[표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 (2024년 12월 기준)

분야	특화단지명	수도권 여부	법16조항호 해당 여부	면적 (천m ²)	투자규모** (억원)
반도체	용인·평택	○	○	16,566	6,220,000(~'47)
	구미	×	○	35,895	51,000(~'26)
이차전지	청주	×	○	14,605	46,000(~'26)
	포항	×	○	11,441	140,000(~'27)
	새만금	×	○	8,100	64,000(~'27)
	울산	×	○	74,331	113,000(~'30)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	○	14,116	172,000(~'26)
바이오	인천·시흥	○	○	31,040	256,908(~'35)
	대전	×	○	8,910	66,329(~'37)
	춘천·홍천	×	○	6,536	20,760(~'40)
	화순	×	○	2,421	12,294(~'33)
	안동·포항	×	○	5,480	6,359(~'33)
합계		-	-	229,441	7,168,650

주: *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 하려는 지역

** 선도기업 민간투자계획 [출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보도자료(2024.3.27.),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 보도자료(2024.6.2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법 제16조제1항은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으로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나 전략기술이 연관된 이전·투자·생산 계획, 또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중 전략산업과의 관련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가시적인 투자 계획 및 인근 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을 위주로 특화단지의 입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고려 지역의 경우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과, 제2호의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동등한 수준에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위주로 검토하는 새로운 지역 선정 유형이 생기고, 특화단지 대상 지역 선정 시 우선순위가 명확해져 비수도권 지역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비수도권을 위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 증가와 인프라 개발, 인구 유입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방의 정주·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으로 청년층이 유입되어 지방소멸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또한, 인력·자본·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른 과밀 문제 등 국가

적 비용이 낮아지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인력 수급, 산업생태계,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고, 기존에 구축되어 온 산업생태계 등의 시너지 및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신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공공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대상의 요건 및 우선 고려 지역에 대해 규정함에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과 아울러 현재 지방의 전반적인 투자유치 및 산업 육성 여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효율성, 인적 여건 등 현실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법 제16조3항은 2022년 12월 개정된 사항⁶⁾으로, 법 개정 전에는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존 사업장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특화단지 지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추가⁷⁾하였음.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205호, 2022. 12. 31 일부개정)

7) 의안번호 211677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35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첨단전략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과 자원을 총력 지원해야 하는 만큼, 특화단지는 기업 집적, 투자 등이 이미 이루어져있거나 예정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비수도권 우선고려 규정(제16조제3항제1호)을 통해 해당 취지가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특화단지 지정요건(제16조제1항)으로 신설하기에는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우선고려 대상에서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삭제할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22.12월)한 취지에 반하여 정책 및 법률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전략기술 유출·침해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 (이재관의원안)

이재관의원안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표 3] 조문대비표

현 행	이재관의원안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u><신설></u>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u>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또는 “법”) 제15조는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위반 시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표 4]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와 위반 시 벌칙

법 제15조 각호의 금지 행위		벌칙 (법 제50조)	
[1호]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외국 사용 목적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2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이나 법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위해 전략기술을 유출, 사용,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호] 전략기술 취득 시 부정행위 개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 공개하거나 취득 후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호] 전략기술 취득 시 또는 취득 후 중대한 과실로 부정행위 개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술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5호]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외국 사용 목적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6호] 전략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인수·합병 등을 수행하는 행위.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7호]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여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8호] 적법한 경로로 제공받은 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개정안은 전략산업의 유출·침해로 인한 피해와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상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먼저,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는 국가 및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가안보, 기술경쟁력, 국제적 평판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는바,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은 제14조제6호⁸⁾를 신설하여 산업기술⁹⁾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였는바, 일반적인 산업기술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략기술에 대해서도 유출 및 침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해에 대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응당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략기술은 현행 법 제11조제7항10)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법개정 없이도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동 금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제15조제9호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 법 제50조(벌칙)제3항11)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면서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가벼워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5] 개정안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형량 비교

개정안에 따른 벌칙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벌칙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제3항)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아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제1항)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제3항)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별도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 시에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거나 2025년 1월 개정한 산업기술보호법 내용의 일부와 취지가 같으므로 시행일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의제되어 현행법에 의해서도 제재가 가능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0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현황(12개)

반도체(2개), 이차전지(4개), 디스플레이(1개), 바이오(5개)

